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9.)

검 토 보 고 서

검 토 안 건	부서명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기획예산과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1월 23일 (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3일 (금)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11조(운영재정 등)

5.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6. 주요내용

- 출연대상기관 : 마포문화재단
- 출연시기 : 2019년도(2019년 본예산 반영)
- 출연의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 마포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기여

7. 마포문화재단 주요 추진사업

- 공연전시사업 : 공연, 전시, 축제사업
- 지역문화사업 : 지역문화 진흥사업,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 생활체육사업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 문화교육사업 :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육성

8.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계	자체수입	출연금
2013	6,036,306	4,575,632	1,460,674
2014	6,528,543	4,490,571	2,037,972
2015	6,922,163	4,711,386	2,210,777
2016	8,105,647	5,016,647	3,089,000
2017	8,858,720	4,744,520	4,114,200
2018	8,936,848	4,533,395	4,403,453
2019(예산안)	9,770,852	4,388,515	5,382,337

9. 출연금 요구내역

총예산안	자체수입	출연금	주요증액사유
9,770,852	4,388,515	5,382,337 (증9억 7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비 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5명 증원, 공무원 22명 증가 • 지역문화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문화교류 조성사업 신설 • 홍보마케팅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중계 및 전산개발비 신설

10.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마포문화재단은 2007년도 설립 이후 창의적인 사업 운영으로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경영평가 S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주민예술가 1만 양성 프로젝트인 '꿈의무대'와 글로벌관광 특화형 도심음악축제 'M-PAT클래식음악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예술경영 컨퍼런스'에서 공공부문 예술경영대상인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 그동안 마포문화재단은 구민이 단순한 '예술소비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술생산자'로서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예술공동체를 형성 하게 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마포구민들과 문화향유를 함께 하고 있으며,
- 시장, 도서관, 라이브클럽, 교회, 공원 등 일상 공간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관광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음.
- 또한, 구민 욕구에 부합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로 건강한 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본 안건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며 출연금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의결할 사항으로,
-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문화예술사업과 생활체육사업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마포문화재단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시 재정규모, 사업의 우선 순위, 문화·체육사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행정자치부 질의 응답 내용

(질의)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7.26 조례 제 671 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 704 호

(일부개정) 2008.09.23 조례 제 71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 ·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892호

(일부개정) 2013.09.26 조례 제9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1.20 조례 제97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는 재단의 설립 ·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